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19.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설치 개선함으로써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4.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9. ~ 1. 26.(7일간)

5. 의견제출

-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u>